

2018년도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

□ 감사개요

○ 감사대상 및 기간

- 체육시설본부: 2018. 10. 01. ~ 10. 08. (5일간)
- 복지시설본부: 2018. 10. 15. ~ 10. 18. (4일간)
- 기반시설본부: 2018. 10. 22. ~ 10. 25. (4일간)
- 환경시설본부: 2018. 10. 29. ~ 11. 02. (5일간)
- 경영전략처: 2018. 11. 05. ~ 11. 09. (5일간)

○ 감사반: 안전감사실장 등 7명

○ 내용: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추진 상황, 부당한 지출 등 예산낭비요인, 집행절차 적정여부, 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 현장 확인점검 등 업무처리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행정상 조치: 41건 (시정 21, 주의 18, 개선 2)

- 본 처 분: 36건 (시정 18, 주의 16, 개선 2)
- 현지처분: 5건 (시정 3, 주의 2)

○ 재정상 조치: 8,930,660원(회수 6,709,420원, 환급 2,221,240원)

○ 신분상 조치: 9명(경징계 1, 경고·훈계 5, 주의 3)



목 차

I . 감사실시 개요	1
II . 감사결과	1
1. 감사처분사항 목록	1 ~ 5
2. 감사결과 요약	6 ~ 19
[붙임] 1. 수범사례	20 ~ 24

2018년도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

▶ 공단 관리시설(1차 4본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2018년도 자체 종합감사 실시 결과 보고임

I.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및 대상: 2018. 10. 01. ~ 11. 09. / 23일간

- 체육시설본부(10. 1. ~ 10. 8.), 복지시설본부(10. 15. ~ 10. 18.)

- 기반시설본부(10. 22. ~ 10. 25.), 환경시설본부(10. 29. ~ 11. 2.), 경영전략처(11. 5. ~ 11. 9.)

※ 감사 대상자료 제출 및 사전조사: 2018. 8. 27. ~ 9. 21. / 20일

○ 감사범위: 2016. 8. 1. ~ 2018. 8. 31.까지 업무처리 전반

○ 감 사 반: 안전감사실장 등 7명

○ 주요 감사사항

- 관련 조례 및 제 규정·내규에서 정하는 업무추진 내용

- 건전한 회계운영, 예산집행 현황 및 세입·세출관리 실태, 공유재산 임대 추진 등

- 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등 안전관리 실태 등

II. 감사결과

1. 감사처분사항 목록

○ 처분 목록(총괄)

구 분	행정상 조치 (건)						재정상 조치 (건/원)			신분상 조치 (건/명)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계	회수	환급	계	징계	경고 훈계	주의
계	41	21	18	2	-	-	13 (8,930,660)	11 (6,709,420)	2 (2,221,240)	9	1	5	3
본처분	36	18	16	2	-	-	13 (8,930,660)	11 (6,709,420)	2 (2,221,240)	9	1	5	3
현지처분	5	3	2	-	-	-	-	-	-	-	-	-	-

○ 본 처분 목록 [36]

행정상 조치 (건)				재정상 조치 (건/원)			신분상 조치(명)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회수	환급	계	경징계	경고 훈계	주의
36	18	16	2	13 (8,930,660)	11 (6,709,420)	2 (2,221,240)	9	1	5	3

계	경영전략처	체육시설본부	복지시설본부	환경시설본부	기반시설본부	공통사항
36	6	7	3	8	7	5

구 분	제 목	처 분			비 고 (해당부서)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1	상시출장직원의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개선			총무인사팀 기획홍보팀
2	직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시정	회수 (465,960원) 환급 (267,960원)		노무복지팀
3	일직근무에 관한 사항	주의		훈계 1	재무회계팀
4	특허공사 계약관련 수의계약 절차에 관한 사항	주의			재무회계팀
5	2017년 총액인건비 초과에 관한 사항	주의		경고 2 훈계 1	노무복지팀
6	교육훈련여비 산출에 관한 사항	시정	회수 (20,000원)		기획홍보팀
7	물품 검수에 관한 사항	시정			한밭운동장운영팀 한밭수영장관리팀 상가지원팀
8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시정	환급 (1,953,280) 회수 (31,640)		한밭운동장운영팀 한밭수영장관리팀 월드컵경기장운영팀 무지개복지센터 위생관리팀 타슈관리팀

구 분	제 목	처 분			비 고 (해당부서)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9	사정인라인스케이트장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주의			한 발 운동장 시설 팀
10	월드컵경기장 서관 1층 외 4개소 출입문 등 수선에 관한 사항	주의			월드컵경기장 시설 팀
11	국민생활관 노후시설 보수공사(기계설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사항	시정	회수 (1,080,000원)		국 민 생 활 관
12	관외출장 여비 계산에 관한 사항	시정	회수 (21,400원)		한 발수영장 관리 팀 수 질 관 리 팀
13	월평사이클경기장 노후시설 보수공사(건축) 정산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시정	회수 (4,057,000원)	주의 1	한 발 운동장 시설 팀
14	한발수영장 경영풀 수심조정공사(건축, 기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관한 사항	시정	회수 (198,000원)		한 발 운동장 시설 팀
15	한발수영장 경영풀 수심조정공사(건축, 기계) 및 수위조절판 재설치에 관한 사항	주의		경고 1 경쟁계 1	한 발 운동장 시설 팀
16	업무용 화물차량 정비 및 관리소홀	주의			한 발수영장 관리 팀 월드컵경기장 운영 팀
17	관내출장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시정	회수 (10,000원)		무 지 개 복 지 센 터
18	기성종합복지관 남녀 샤워실 사우나 좌식의자 수선 등 3건 선 시공에 관한 사항	주의			기 성 종 합 복 지 관
19	기성종합복지관 노인유사 체험용품 구입에 관한 사항	주의			기 성 종 합 복 지 관
20	예산집행품의에 관한 사항	주의		주의 1	수 질 관 리 팀
21	1,2처리장 수처리시설 악취저감설비 설치공사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시정	회수 (517,000원)		운 영 1 팀
22	3처리장 침사인양기 2호기 수선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주의			운 영 1 팀
23	차집관로 환기구 시설개선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관한 사항	시정	회수 (277,620원)		하 수 시 설 팀

구 분	제 목	처 분			비 고 (해당부서)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24	하수처리장 탈수실 철물제작 설치공사 제작승인에 관한 사항	주의		주의 1	운 영 2 팀
25	4처리장 최초침전지 상부 슬래브 보수공사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수수료 정산에 관한 사항	시정	회수 (30,800원)		하 수 시 설 팀
26	수중펌프 수선비용 견적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시정			대 청 호 시 설 팀
27	전기설비 및 역률관리 소홀에 따른 전기요금 과지출	시정			수 질 관 리 팀 하 수 시 설 팀 대 청 호 시 설 팀 위 생 관 리 팀
28	공유재산(현금인출기) 사용·수익허가 계약에 관한 사항	시정			상 가 지 원 팀
29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	주의			상 가 지 원 팀
30	역전지하도상가 고객쉼터 및 회의실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주의			상 가 지 원 팀
31	2018년 역전지하도상가 팬코일유니트 청소 위탁 관리용역 감독에 관한 사항	시정			상 가 지 원 팀
32	타슈 재배치 공용차량(7대) 유류수불대장 작성 부적정	시정			타 슈 관 리 팀
33	전기안전관리 규정의 점검항목 미 실시에 관한 사항	주의			공 동 구 관 리 팀
34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수익허가 계약에 관한 사항	개선			상 가 지 원 팀
35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신청서 민원서류 처리 및 공유재산 보고)	주의			한 발 운동장 운영팀 용운 스포츠 센터 국 민 생 활 관 정 수 원 운 영 팀 상 가 지 원 팀

구 분	제 목	처 분			비 고 (해당부서)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36	CCTV 처리정보 제공 및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			한밭운동장시설팀 용운스포츠클럽센터 기성종합복지관

○ 현지처분 목록 [5]

행정상 조치 (건)				재정상 조치 (건/원)			신분상 조치(명)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회수	감액	계	경징계	훈계
5	3	2	-	-	-	-	-	-	-

계	경영전략처	체육시설본부	복지시설본부	환경시설본부	기반시설본부	공통사항
5	2	1	2	-	-	-

구 분	제 목	처 분			비 고 (해당부서)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1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 미정리)	시정			한밭운동장운영팀 한밭수영장관리팀 월드컵경기장운영팀 국 민 생 활 관
2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보수 지급시 증빙서류 기재 오류	시정			정수원운영팀
3	관외출장 여비 계산에 관한 사항	주의			정수원운영팀 추모공원관리팀
4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 미비치)	시정			재무회계팀
5	사전집행품의에 관한 사항	주의			총무인사팀

2. 감사결과 요약

본 처분: 지적사항 주요내용

① 상시출장 직원의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개선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됨으로써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지정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를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단에서도 월액여비를 상시출장 직원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는 월액여비 예산은 공단 규정에 따른 국내 월액여비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기획홍보팀에서는 예산 편성 시 내부 규정 없이 월액여비 예산을 편성하였고, 총무인사팀에서는 공단 자체 여비내규 내에 월액여비 지급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② 직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시정 / 회수 · 환급

- 「공단 보수 규정」 제32조(직무수당)에서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8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현재까지 부서별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전기안전관리 담당 및 보조, 위험물안전관리 담당(도시가스 및 보일러 취급담당자 등) 직원에 대해 월 15~30천원을 직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노무복지팀에서는 연 2회(2·8월) 인사발령으로 해당 시설에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전임자에 대해 후임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전까지 직무수당을 지급하였고, 후임자에게는 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 된 일자에 맞춰 직무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③ 일직근무에 관한 사항 / 주의 / 훈계

- 「공단 취업 규정」 제41조(당직근무) 제1항에 따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기타 사고의 예방과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당직근무 시행내규」 제10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에 따라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제1~6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무회계팀 행정☆급 ☆☆☆ 직원은 총무인사팀에서 시달한 2018년 9월 일직근무 명령에 대해 공람한 문서를 본인이 확인하였음에도 사전 당직근무 변경 등 별도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2018. 9. 30.(일)에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음

④ 특허공사 계약관련 수의계약 절차에 관한 사항 / 주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5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 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 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9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특허공법·신기술 등이 공사전체의 85.72% 이상인 경우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를 평가 후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한 사실이 있음

⑤ 2017년 총액인건비 초과에 관한 사항 / 주의 / 신분상 경고·훈계

- 2017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의 총인건비 범위 및 인건비 인상률 상한기준에 따라 총인건비 예산은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5% 이내에서 증액 편성하고 경영평가 인건비 인상률 준수에 있어서는 “2개년도(2016년, 2017년) 만근자를 기준으로 2016년도 총인건비의 3.5% 인상률 내에서 임금인상분을 산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무복지팀(2018. 8. 1. 조직개편 이전 총무팀)에서는 담당직원(행정○급 ○○○)의 착오로 대우수당 산정 시 실제 반영해야 할 33명(40,327천원)이 아닌 10명(7,253천원)의 수당으로 산정하여 23명(33,074천원)이 누락된 금액으로 산출하였고, 누락된 대우수당 금액만큼 기본급 및 기본급과 연동되는 다른 수당(통상임금 등)이 인건비 산출에 영향을 미쳐 총 금54,341천원(0.81%)초과로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공기업 정책준수 항목”에서 1점이 감점되는 등 인건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⑥ 교육훈련여비 계산에 관한 사항 / 시정 / 회수

- 「공단 교육훈련 내규」 제12조(교육경비의 지급기준)의 별표 1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의하면 근무지 내·외의 지역에 상관없이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여 합숙하는 경우의 일비는 등록일(입교일)·수료일은 전액지급하고 기타일은 미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7년 11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여비의 산출 시 합숙일 경우 기타일 일비는 지급하지 않아야 하나 비합숙 기타일 일비의 방법(일비의 50%)으로 산출하여 교육훈련여비 총 20천원(각 10천원)을 과지급한 사실이 있음

⑦ 물품 검수에 관한 사항 / 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계약법”이라 함) 제17조(검사)에 의하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단 물품관리 내규」 제20조(검사 및 검수의 실시)에 검사 완료 기한, 검사 장소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검수 시 검수대상¹⁾을 나열하고 있음에도, 한밭운동장운영팀, 한밭수영장관리팀 및 상가지원팀에서는 검사 조서를 확인한 결과 검수사진에 컴퓨터 부품 및 수선 사진 등 검수 확인에 필요한 증빙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며,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 모니터 사진을 검수사진으로 첨부하여 물품 수선이 정확히 이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

⑧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 시정

- 공단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 지침」 4. 복무관리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5일간 근무하였을 때에는 1일간의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5.1.), 공단 창립기념일(1.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기타 정부에서 지정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한밭운동장운영팀 등 6개 팀에서는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보수를 지급하여 임금 1,953,280원을 미지급하였으며, 착오로 인한 임금 31,640원을 과지급한 사실이 있음

⑨ 사정인라인스케이트장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6절 1. 설계변경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한밭운동장시설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6절 1. 설계변경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은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시공해야 하나, 설계변경 공종에 대한 시공이 완료될 때(7. 27. ~ 10. 18.)까지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보험료 준공정산에 맞춰 설계변경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1) 수량, 외관, 형상, 치수, 품질, 표식, 포장상태를 계약서·규격서·시방서·도면·견본 등과 비교 대조함

⑩ 월드컵경기장 서관 1층 외 4개소 출입문 등 수선에 관한 사항 / 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월드컵경기장시설팀에서는 일부 사업내용을 당초 계약내역과 상이(남관 1층: 출입문 교체 → 힌지교체, 서관 3층: 출입문 보수 → 출입문 교체)하게 추진하고 총 비용의 변경(증 55,000원)이 있었음에도,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준공검사 시 당초 계약내용과 같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준공완료 처리한 사실이 있음

⑪ 국민생활관 노후시설 보수공사(기계설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사항 / 시정 / 회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국민생활관에서는 안전관리비 정산 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안전모 17개만 정산해야 하나, 5·6월 구입분(20개) 모두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고,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한 코팅장갑 40개 등을 정산에 포함하는 등 안전관리비 198,000원 과대 지급하였으며 환경보전비 정산 시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만 정산하지 않고 정산 적용이 불가능한 단순 현장청소 인건비를 정산 반영하여 환경보전비 624,000원 등 총 1,080,000원을 과대 지급한 사실이 있음

⑫ 관외출장 여비 계산에 관한 사항 / 시정 / 회수

- 「공단 여비 내규」 제7조(출장지의 구분) 별표 1의 여비기준표에 의거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국내여비 기준표의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한밭수영장관리팀에서는 철도운임 산출 시 1급 이하의 직원은 2등급(일반실)으로 산출하지 않고 1등급(특실)로 산출하여 19,000원 과지급하고, 수질관리팀에서는 할인요금이 아닌 할인 전 요금으로 지급하여 2,400원을 과지급한 사실이 있음

⑬ 월평사이클경기장 노후시설 보수공사(건축) 정산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시정 / 회수

-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한발운동장시설팀에서는 안전관리비 정산 시 안전시설비 명목으로 현장 경계휀스 비용을 정산에 포함하는 등 안전관리비 6,300,000원을 과대 지급하였으며, 공사원가계산서 비목 정산 오류로 폐기물 처리비 3,080,838원을 누락 적용하여, 정상 정산 원가계산서 총공사비 583,343,000원을 587,400,000원으로 정산 오류 설계변경 및 재계약하여 총 4,057,000원을 과대 지급한 사실이 있음

⑭ 한발수영장 경영폴 수심조정공사(건축, 기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관한 사항 / 시정 / 회수

-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한발운동장시설팀에서는 안전관리비 정산 시 현장대리인에게 안전관리자 수당을 지급, 정산에 포함하는 등 안전관리비를 198천원 과대 지급한 사실이 있음

⑮ 한발수영장 경영폴 수심조정공사(건축, 기계) 및 수위조절판 재설치에 관한 사항 / 주의 / 경고·경징계

-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 2014. 5. 23. 제정) 제5조(성실의무)에 따르면 공사감독자가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목적물 완성을 위하여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신중히 수행해야 함에도 공사감독자 ◇◇◇(건축◇급. 2017. 2. 10. 지정)은 당초의 사업목적은 이루기 위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설계용역 준공(2017. 3. 17.) 최종결과물에 콘크리트 구체화 단차 설계를 미반영 한 사실이 있으며, 한발수영장 재개장(2017. 7. 1.) 이후 단차의 부재로 인해 아쿠아로빅 일부회원의 민원이 발생하여 추석연휴(2017. 10. 2. ~ 10. 9.)기간 수위조절판 재설치(1~3레인 / 수심 1.2m → 1.1m 조정)를 시행하는 등 당초 사업목적은 완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⑩ 업무용 화물차량 정비 및 관리소홀 / 주의

- 「공단 차량관리 내규」 제24조(지도·점검 등) 및 제25조(기록관리)에 의하면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사항에 대하여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1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내규 제26조(근무지침) 제2항에 따라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차량소모품 점검 및 교환주기 참고)하여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월드컵경기장운영팀에서는 2013년 12월 차량(82고3578)을 구입한 후 현재까지 일체의 소모품관리 및 정비사항이 전무하였고, 한밭수영장관리팀에서는 2014년 2월 구입한 차량(72조4610)에 대해 최초 엔진오일 교체 시(2014. 6. 25. / 9,575km 주행)부터 최근 교체 시(2017. 6. 20. /26,656km 주행)까지 약 17,000km 주행기간 내 일체의 소모품관리 및 정비를 실시하지 않아 정비 기록 누락 등 소관차량에 대한 관리 및 정비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⑪ 관내출장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 시정 / 회수

- 「공단 여비 내규」 제7조(출장지의 구분) 제1호에 따라 “관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 2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전용차량이 배정된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단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10,000원을 감하여 지급” 해야 함에도 무지개복지센터에서는 직원 관내출장(5건)에 대해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총 60,000원을 지급해야 하나 70,000원으로 잘 못 계산하여 10,0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음

⑫ 기성종합복지관 남녀 샤워실 사우나 좌식의자 수선 등 3건 선 시공에 관한 사항 / 주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함)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하여야 하며, 「지방회계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함에도 기성종합복지관에서는 3건의 수선을 진행하면서 고장보고서에 긴급수선으로 선 조치 후 예산을 집행한다고 명시하고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선 시공한 사실이 있음

①9 기성종합복지관 노인유사 체험용품 구입에 관한 사항 / 주의

- 「공단 회계 내규」 제148조 1항에 따르면 “예산집행품의 시 공단 위임전결내규에 따라 결재를 득하여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별지 제27호 서식) 작성” 하여야 하며, 「공단 위임전결 내규」 제4조 1항에 따라 “물품 구입 시 전결권자로 예산집행 기본계획(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 사업)은 처·본부장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성종합복지관에서는 노인유사 체험용품 구입 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체험용품에 대한 물품 규격서 없이 견적서만 첨부하여 품의 요구한 사실이 있음

②0 예산집행품의에 관한 사항 / 주의 / 신분상 주의

- 「공단 회계 내규」 제148조(예산집행품의) 제1항에 의하면 “예산집행품의 시 공단 위임전결내규에 따라 결재를 득하여(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²⁾에 대해 나열하고 있음에도 수질관리팀에서는 야간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2017. 6. ~ 8월)를 지급함에 있어 사전예산집행품의 없이 지출한 사실이 있음

②1 1,2처리장 수처리시설 악취저감설비 설치공사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 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 이라 한다)」 제1장 제8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이하 “보험료” 라 한다)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한다” 고 되어 있어 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1팀에서는 낙찰률을 적용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반영하고 정산하여 517천원을 과지급한 사실이 있음

②2 3처리장 침사인양기 2호기 수선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대전공공하수처리시설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내용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2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후에는 교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운영1팀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에 따른 특별교육 시 자격이 없는 공사 감독자가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1.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여비 / 2. 각종 법정 경비 / 3. 기타 정례적인 확정경비

㉓ 차집관로 환기구 시설개선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관한 사항 / 시정

-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하수시설팀에서는 안전관리비 정산 시 공사 수행을 위한 현장 주변 교통정리 등이 주요 업무인 장비신호수 인건비를 정산에 포함하는 등 안전관리비 277,620원을 과대 지급한 사실이 있음

㉔ 하수처리장 탈수실 철물 제작 설치공사 제작승인에 관한 사항 / 주의 / 신분상 주의

-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28조(시공상세도의 승인)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를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통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공사 일반시방서 제8항에 계약자는 자재의 상세제작 및 설치도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라고 명시하였음에도 사전 서면승인 등의 확인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 한 사실이 있음

㉕ 4처리장 최초침전지 상부 슬래브 보수공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정산에 관한 사항 / 시정 / 회수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4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직영 시공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과 직불합의 등에 의하여 보증서 발급비용에 발생되지 않은 경우와 지급금액이 도급금액 산출서 명시금액 이하일 시에는 감액 정산을 해야 함에도 하수시설팀에서는 자료가 없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비용 30,800원을 미정산한 사실이 있음

㉖ 수중펌프 수선비용 견적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 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에 따라 거래실례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포한 가격(거래가격, 물가 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등으로 하여야하고 견적가격의 경우 객관화 된 가격이 아닌 만큼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대청호시설팀에서는 규격이 더 작은 펌프를 수선하면서 전월 규격이 더 큰 펌프 수선비 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동일한 부속품을 2018. 4월, 5월 교체하면서 50천원의 가격 차이가 나는 등 견적가격 비교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㉗ 전력설비 및 역률관리 소홀에 따른 전기요금 과지출 / 시정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기준역률(지상 90%, 진상9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전에서는 매월 전력량을 체크하여 기준역률 이하인 경우에는 매월 납부하는 전기요금에 기준역률보다 적은 만큼의 패널티를 부여하고 기준역률 이상인 경우에는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환경시설본부 수질 관리팀, 하수시설팀, 대청호시설팀, 위생관리팀에서는 일상점검(수변전일지 일일점검) 및 매월 한전에서 청구되는 전기요금고지서를 통한 기준역률 저하에 대한 내역을 미확인하여 부적합 설비 등의 사전조치(콘덴서 교체 등)를 시행하지 않는 등 전력설비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감액된 전기요금 대비 패널티 요금이 더 부과된 사실이 있음

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 및 「공단 재산관리 내규」 제31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금) 제1항 제1~4호에 의하면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 고지 하고, 연체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는 연 14퍼센트,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로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음에도 상가 지원팀에서는 역전지하도상가 내 공유재산(현금인출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 제6조(연체료)에 “사업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공단이 고지한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료율은 연 15%로 한다” 고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㉙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 / 주의

- 「공단 회계 내규」 제48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제2항에 “지정 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담당은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일일결산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장한다.” 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4항에는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

내온 수입·지출일계표에 의하여 매일의 자금수입 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장한다” 고 되어 있음에도 상가지원팀에서는 발생한 수입에 대해 자금일일결산표를 미작성하였고 수입담당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수입징수를 위해 상가점포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고지한 날부터 적게는 2일, 많게는 7일 동안 분임수입계좌에 수입금을 방치하였다가 수입금을 시금고에 납입처리 한 후에 입금 및 미수금 현황을 보고하였으며, 자금일일결산표에 의해 매일의 수입금현황을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장해야 함에도 수입금을 시금고에 납입처리 한 후에 월단위로 작성하였고 중앙로지하상가 사용료 수입과 계좌이자 수입 등 수입금의 모든 내역(계좌입출금 내역)이 수입예산정리부에 기장되지 않는 등 수입금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㉔ 역전지하도상가 고객센터 및 회의실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 주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16조(감독)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가지원팀에서는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였으나 2017. 3. 31. 실시설계용역 추진 시 전문 분야 감독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준공 시에도 소관 팀장이 준공검사자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당초 계획과는 달리 분장사무를 불이행 하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㉕ 2018년 역전지하도상가 팬코일유니트 청소위탁관리용역 감독에 관한 사항 / 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가지원팀에서는 준공검사 시 실내기(16대) 청소 및 외관 점검에 대한 작업사진은 첨부하지 않고, 팬코일유니트에 대한 청소 사진(1·2대분 및 세부 작업사진 없음)만을 첨부하여 명확한 청소용역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근거자료가 없으며, 최초 과업지시서 작성 시 해당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기별 작업방법(점검·청소일지 작성 등)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과업지시서 부실 작성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㉔ 타슈 공용차량(재배치) 유류수불대장 작성 부적정 / 시정

- 「공단 차량관리 내규」 제22조(유류 등 사용정산) 제2항에 따르면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등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 유류 등 지급상황, 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내규 제25조(기록관리) 제2항에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차량유류수불대장 기록 시 당일 실제 발생한 유류 수입량과 불출량을 기재하여 유류 수불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고 당일 유류 수입량과 불출량을 동일하게 기재하여 실제 수량과 상이하게 관리하였으며, 잔고량도 미기재 하는 등 대장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㉕ 전기안전관리 규정의 점검항목 미 실시에 관한 사항 / 주의

-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에서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매년 작성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전기안전관리 규정의 점검항목 중 필수 항목인 전원품질분석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일상·정기 점검으로 전기 품질의 기록 작성 및 보전해야 함에도 공동구관리팀에서는 2016년 8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 1회 필수점검 항목인 전원품질분석 점검을 누락하고 전원품질분석을 위한 소요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등 전기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㉖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수익허가 계약에 관한 사항 / 개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공단 재산관리 내규」 제31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 하고, 연체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는 연 14퍼센트,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로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음에도 상가지원팀에서는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점포 사용·수익허가 계약서 제4조 제3항 “사용료는 월 선납으로 납부한다” 및 제6조 “사업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공단이 고지한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 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210개 점포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㉟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주의

- 「공단 민원사무 처리 내규」 제2조(정의)에 의하면 “민원인이라 함은 공단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하며” 같은 내규 제4조(민원사항의 접수·처리)에 따라 “민원사항은 부서별 처리부서 또는 문서수발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접수하며, 다만, 당해 민원의 처리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직접 접수·처리할 수 있고, 민원서류는 민원서류처리부에 등재하여 접수한 후 그 민원서류 왼쪽 윗부분에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 즉시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고, 처리부서는 일반문서와 구별하여 부서별 민원사무처리대장에 의하여 접수” 하여야 함에도 한밭운동장운영팀 등 5개 팀에서는 일반문서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공단 재산관리 내규」 제26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그 사항을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담당에게 보고” 해야 하나 상가지원팀 등 4개 팀에서는 총괄재산관리담당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같은 내규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에서 “관리자는 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상가지원팀에서는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같은 내규 제28조(대부료 납기) 제1항 제2호의 “대부료가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 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로 납기를 정해야 함에도 정수원운영팀에서는 커피 판매점에 대한 3차년도 사용료 납부 안내 시 납기일을 사용허가 개시일에 해당되는 2017. 3. 3.까지로 고지하였고, 사용료 납부 안내 공문도 사용허가 개시일 당일(2017. 3. 3.)에 발송한 사실이 있음

㉔ CCTV 처리정보 제공 및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 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 정보를 수집 목적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열람하거나 이를 제공하는 경우 각 사업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6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제4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제공 시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근거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함에도 한밭운동장시설팀 및 기성종합복지관에서는 CCTV 처리정보 요청 건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받고자하는 기관(자)으로부터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한 문서를 요청하지 않고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대장을 비치하여야 함에도 용운스포츠센터 및 기성종합복지관에서는 대장을 비치하지 않는 등 개인영상정보 관리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현지처분: 지적사항 주요내용

①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시정

- 「공단 재산관리 내규」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에 의하면 “관리자는 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한밭운동장운영팀, 한밭수영장관리팀, 월드컵경기장운영팀에서는 공유재산을 대부 및 사용허가 함에 있어 일부 임대업체(기관)의 대부(사용)료를 분할납부로 징수하고 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에 그 사항을 정리하지 않았고, 국민생활관에서는 시설보수공사에 따른 임대시설의 허가기간 연장 계약(2018. 6. 15. → 2018. 11. 15.)을 체결하고도 그 사실을 재산의 대부 및 사용 정리부에 정리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②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 시정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서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연초 시달되는 사업계획에 따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30시간 범위 내로 근로하는 조건이며, 임금은 1인당 월 200~270천원을 지급하고 새누리 전산

시스템에 관련 자료(근로시간, 보수 지급내역 등)를 입력 후 월별 보수대장명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수원운영팀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을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2016년 9 ~ 11월) 함에 있어 증빙서류(보수내역) 작성 시 근로시간을 오기(월 30시간 → 20시간)로 작성하고 1인당 보수를 월 200천원을 지급하였고, 새누리 전산시스템 입력 시에는 실제 근로시간인 30시간으로 입력하여 지출 증빙서류와 월별 보수대장명부가 불일치하는 등의 사실이 있음

③ 관외출장 여비 계산에 관한 사항 / 주의

- 「공단 여비 내규」 제9조(여비의 정액)에 의하면 “여비는 별표 1의 여비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고 되어 있으며, [별표 1] 국내여비 기준표 ※비고 제3호에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수원운영팀 및 추모공원관리팀에서는 관외출장 시 「공단 여비 내규」 를 준용하여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교통비를 산출해야 하나, 연료비 지급기준[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으로 산출하여 7회에 걸쳐 여비를 지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④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시정

- 「공단 재산관리 내규」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담당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 제32조에 따라 “총괄재산관리담당은 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별지 제9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재무회계팀에서는 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지 않았으며, 특히 14건에 대해서는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지 않아 보고가 누락되는 등 공유재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⑤ 사전집행품의에 관한 사항 / 주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3. 신용카드 사용절차 1.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집행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총무인사팀에서는 사전집행품의 금액보다 적게는 5천원 많게는 10천원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붙임 1]

수 범 사 례

1.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
2. 하수처리장 무재해 10배수 목표 달성
3.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기관표창
4.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제 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							
추진개요	<p>○ 「2018년 안전문화대상」 공모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제: 조직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문화 우수사례 - 지원부문: 지자체(광역, 기초), 공공·비영리, 민간기업 4개 부문 - 시 상: 대상(대통령), 최우수상(국무총리), 우수상(장관) 표창 <p>○ 드론 활용 시설물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개요: (2018년) 1대 운영 ⇒ (2019년) 1대 추가 확보 및 활용 확대 - 점검대상: 월드컵경기장 등 41개소 *인적 접근이 어렵고 점검범위가 넓은 시설물 							
추진실적	<p>○ 「2018년 안전문화대상」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 수상 *포상금: 2백만원</p> <table border="1" data-bbox="402 896 1417 1030"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모 참여 8. 7.</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차 심사결과 통보 8. 23.</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차 PT심사 9. 5.</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우수상(장관) 최종 결정 11. 14</td> </tr> </table> <p>※ (공모명) 현장 중심의 다양한 안전관리 시책 추진</p> <p>○ 드론 활용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2018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11.5.~11.9.) 시 - 대 상: 하수처리장 등 7개 사업장 - 결 과: 한밭주경기장 관람석 캐노피 지붕구조 일부부식 등 4건 확인 및 해당부서 후속조치 이행 권고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data-bbox="354 1411 865 1765" style="text-align: center;">  <p>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p> </div> <div data-bbox="880 1411 1391 1765" style="text-align: center;">  <p>장관상 표창 수여</p> </div> </div>	공모 참여 8. 7.	⇒	1차 심사결과 통보 8. 23.	⇒	2차 PT심사 9. 5.	⇒	우수상(장관) 최종 결정 11. 14
공모 참여 8. 7.	⇒	1차 심사결과 통보 8. 23.	⇒	2차 PT심사 9. 5.	⇒	우수상(장관) 최종 결정 11. 14		
기대효과	<p>○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운동 참여 확산</p> <p>○ 드론 활용 안전점검으로 점검자의 안전 확보 및 시설물 안전사각지대 위험요소 개선 등 안전점검 효율성 제고</p>							

제 목	하수처리장 무재해 10배수 목표 달성	
추진개요	<p>○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시행령 제3조의 4(무재해운동의 추진)</p> <p>○ 목 적: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적 활동 실시로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함</p> <p>※ 무재해 10배수: 고용노동부가 기준으로 정한 연 평균 작업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시간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p>	
추진실적	<p>○ 달성기간: 2014. 1. 24. ~ 2018. 7. 1.(1,207일) / 공휴일 포함</p> <p>※ (1배수) 2014. 8. 22. → (5배수) 2016. 12. 12. → (8배수) 2018. 2. 9. → (9배수) 2018. 4. 21. → (10배수) 2018. 7. 1.</p> <p>○ 인증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인증일: 2018. 7. 30.</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405 1173 903 1630" style="text-align: center;">  <p>무재해 10배수 달성 인증패 수여</p> </div> <div data-bbox="916 1173 1414 1630" style="text-align: center;">  <p>10배수 달성 무재해 수치(綬職) 수여</p> </div> </div>	
기대효과	<p>○ 안전의 생활화로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많은 하수처리장의 무재해 최고 기간(전국 100인 노동자가 일하는 위생·유사서비스 업종 중 최고)달성</p> <p>○ 안전이 최우선인 무재해 일터 조성으로 공단 대외 이미지 제고 기여</p>	

제 목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기관표창	
추진개요	<p>○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제15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 시(2018. 2. 13.) ‘2017년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기관표창’ 수상 *포상금: 700천원</p>	
추진실적	<p>○ 수공기간: 2017. 1. 1. ~ 12. 31.</p> <p>○ 공적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등급 향상 / 2016년 “다” 등급→ “나” 등급 - 일자리 문제 해소 기여 / 청년고용률 목표 초과달성(목표: 정원의 3% → 실적: 3.63%),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10명) 추진 - 상생하는 지역사회 조성 노력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월평균 45명 장애인 근로자 상시 고용 및 재취업 지원 등), 노사합동 사회공헌 추진 (노사합동 사랑의 물품기부 행사 3회, 농촌사회공헌활동 등)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기대효과	<p>○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통한 전국 제일의 지방공기업으로 도약기회 마련</p> <p>○ 공단 위상 제고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방공기업 경쟁력 강화</p>	

제 목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추진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적: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장을 공개경쟁으로 선정 및 지원 ○ 심사기준: 2016년 ~ 2017년 노사문화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관계(100점), 노사문화 실천요소(500점), 노사 사회적 의무(400점) ○ 심사방법: 사전검증 → 1차 심사(서면심사) → 2차 심사(사례발표) ○ 선정방법: 2차 심사에서 만점의 85%(595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5. 8.: 공단 노사문화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018. 6. 15.: 1차 심사(서면심사) 결과 발표 ○ 2018. 7. 3.: 공단 노사문화 우수 추진실적 사례발표 / 이사장 ○ 2018. 8. 27.: 인증서·인증패 수여 / 대전지방노동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기간: 2018. 8. 7. ~ 2021. 8. 6.(3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상생의 노사문화 대외 입증 및 노사분야 정부지원 혜택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간), 은행 금리우대 등 	